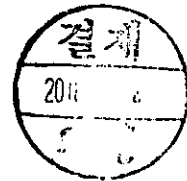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  
시민을 생각합니다

## 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18. 8.

서울특별시의회  
(의사담당관)

No-191



#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## □ 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89)	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-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2 신설)	이영실 의원 외 13명 (보건복지)	2018. 8.16
2 (90)	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 - 청년 창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 등	오중석 의원 외 3명 (찬성 9명) (기획경제)	2018. 8.16
3 (91)	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·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- 건축안전센터는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9조제2항 신설) 등	최웅식 의원 (찬성13명) (도시계획관리)	2018. 8.16
4 (92)	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문제는 일자리, 복지, 주거,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·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 따라서 청년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- 활동기간 :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- 위 원 수 : 15명 이내	이동현 의원 외 13명 (운영)	2018. 8.16

5 (93)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 -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제8호) -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	황인구 의원 외 29명 (교육)	2018. 8.16
6 (94)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」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근거조항(제10조의2)의 효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 신설 -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(제10조의2)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(부칙 <제6071호, 2016. 1. 7.> 제2조)을 삭제 -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(안 제10조의3)	권영희 의원 (찬성 12명) (기획경제)	2018. 8.16
7 (95)	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- 청렴시민감사관을 정의함(안 제2조) -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함(안 제3조) 등	장인홍 의원 외 12명 (교육)	2018. 8.16
8 (96)	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육성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계정 신설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 -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용자계정 및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(안 제3조의3, 안 제4조·제6조·제7조·제9조) -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(안 제18조, 안 제21조)	유 용 의원 외 11명 (기획경제)	2018. 8.16
9 (97)	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에 '보조' 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·운영 근거 마련 -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'출연 또는 보조'로 변경(안 제17조) -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항 신설(안 제20조제2항)	채인묵 의원 외 9명 (기획경제)	2018. 8.16
10 (98)	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의 행복증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- "행복"과 "행복 격차"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 -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 등	서운기 의원 (찬성 44명) (기획경제)	2018. 8.16

11 (99)	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 - 시장에게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,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 -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 등	서윤기 의원 (찬성 38명) (기획경제)	2018. 8.16
12 (100)	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 증진 도모 -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 -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4조)	김소영 의원 (찬성 9명) (문화체육관광)	2018. 8.16
13 (101)	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진흥 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-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사하고, 그 외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4조)	김소영 의원 (찬성 9명) (문화체육관광)	2018. 8.16
14 (102)	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-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4조) -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5조~9조) -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(안 제10조~12조)	최기찬 의원 (찬성 12명) (문화체육관광)	2018. 8.16
15 (103)	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이 제3자의 자살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,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- 시민이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추가함(안 제3조) - 시장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할 책무를 부과함(안 제4조)	최기찬 의원 (찬성 12명) (보건복지)	2018. 8.16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